

의안번호	제00호
회의 연월일	2024. 8. 19. (제545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4. 7. 10.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8~9월 중 입법예고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

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신청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
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에 부착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등록증 사본(「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경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건설기
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을 한 경우 건설기계등
록증 사본). 다만, 등록 및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제35조제2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및 운영자 신분증 사본.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① 법 제50조의3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착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장치명 등 장치 정보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정보
- ②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착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장치명 등 장치 정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에 관한 정보

나. 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 명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운영자 명의(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 절차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

우

2.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장·파손·분실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 기간과 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날
 3. 정기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 ③ 정기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3과 같다.
- ④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9(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운행기록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

국도로교통공단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3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0(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신청)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3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1(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장치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33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① 제33조의10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여 그때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경우
2.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3. 시동제한 기능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운행기록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
5.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할 수 없는 경우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을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조건 부과와 통지 및 기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85조제2항”을 “법 제85조제2항, 제85조의3제2항”으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85조”를 “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으로,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6조”를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로 한다.

별표 13의2 및 별표 1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에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3항 및 제61조 관련)”을 “신체상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3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1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0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주운전 관련 조건

대상자	운전면허	조건 부과기준	운전면허증 기재방법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모든 운전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K

(주)

1. 운전면허증에 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을 기재한다.

별표 28제2호에 일련번호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	---	------	--

			해당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

별지 제 17호의2 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부착기간을 기재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뒤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부착 기간을 기재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안내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초보운전자(최초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사람)로서 가목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
3.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음주운전교육, 배려운전교육, 법규준수교육(의무)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4.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그 밖에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일정·장소·수강료 등은 한국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부품 및 기능의 기준(제33조의4 관련)

1. 부품 및 기능

부품명	기능
가. 음주호흡 분석기	· 운전자의 호흡 샘플 내 알코올을 분석하여 제어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나. 제어장치	· 호흡시료 측정결과를 차량시동부와 전기 회로적으로 연결하여 시동을 제한하는 기능
다. 운행기록 저장부	· 운전자의 운행기록(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호흡 측정결과, 호흡채취 시 운전자 얼굴 사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
라. 카메라	· 호흡측정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하고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는 기능

2. 제1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품별 세부기준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기준 및 방법(제33조의8 관련)

1. 일반사항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항목은 최초 설치 후 부착장치의 임의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일성 검사, 외관검사, 음주측정부 정확성 확인을 위한 표준가스검사, 운행기록부 정상저장 여부 확인,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는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6개의 검사항목을 모두 시행해야 하며 이 중 1개 이상의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부착장치의 기능오류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검사결과 통지서(부적합)를 통보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검사 분류	검사항목	주요 점검 사항	판정
가. 동일성 확인검사	① 최초 설치장비와의 동일여부	모델, 음주측정부, 제어장치 일련번호 일치여부	☐ 적 ☐ 부
나. 외관검사	② 변경방지 봉인스티커 상태 ③ 음주측정부 외관 상태	스티커 상실, 재접착 흔적, 외관의 구멍 존부	☐ 적 ☐ 부
다. 음주측정부 정확도 검사	④ 영점교정 5회 주입 ⑤ 시동차단 수준 이하 알코올 가스 5회주입 ⑥ 시동차단 수준 이상 알코올 가스 5회주입	차단(실패), 비차단(성공)확인 3점교정항목 모두 기준만족 측정값 오류 기재	☐ 적 ☐ 부
라. 운행기록 정상저장여부 검사	⑦ 호흡샘플(입김) 정상주입 시 장치기록 여부 ⑧ 호흡샘플(입김) 소량주입 시 장치기록 여부	운행기록부 저장부 정상기록여부 확인 (호흡측정 성공/실패 확인)	☐ 적 ☐ 부
마. 시동잠금 제한 기능 이상 유무	⑨ 시동차단 수준(0.03%)의 알코올가스 주입	시동차단 성공여부 확인	☐ 적 ☐ 부
바.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얼굴 인식	⑩ 호흡샘플 주입 시 운전자의 얼굴 확인 가능	화질상태 등 운전자 식별 가능 여부 및 얼굴 중앙 위치 등	☐ 적 ☐ 부
사. 그 밖의 시정 권고 사항 기술	⑪ 그 밖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 등을 기술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관련)

5.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법 제73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1시간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운전자의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강의·시청각 등

(비고)

1.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 소유자 (신청인이 다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치 표시	제조사	부착일자
	형식모델	부착기간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자동차 표시	차명	형식·연식
	차종·용도	원동기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사유 (변경 시 작성)	☐ 장치 변경 ☐ 자동차 변경 ☐ 부착기간 ☐ 기타() 상세 내용()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제33조의6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33조의5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신청인 제출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1부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1부 4. 그 밖에 등록 및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5. 자동차등의 소유자와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의 종별 및 소유자에 따라 제출 서류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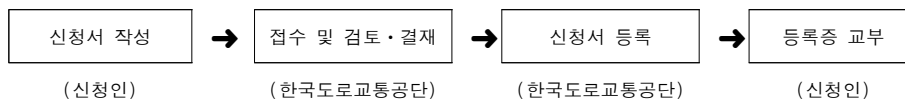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제출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1부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1부 4. 그 밖에 등록 및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및 운영자 신분증 사본(어린이통학버스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1부 8.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의 종별 및 소유자에 따라 제출 서류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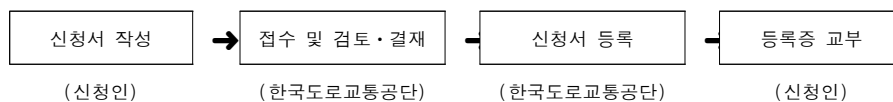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설치일자	
신청인 표시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타사항	조건부 면허발급일자 : (장치부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자동차 표시	차대번호		차명	(제조사) (브랜드)	
	차량모델명		형식 및 제작연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표시	제조사		모델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상기와 같이 **제조사(모델명)에서 제작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요청한 신청인의 차량에 이상 없이 장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업체상호

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유자 (동의자)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 연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

[illegible]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명서

등록번호		등록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차량 소유자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치 표시	제조사	부착일자	
	형식모델	부착기간	
	제어장치S/N	음주측정부S/N	
자동차 표시	차명	형식·연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검 사 신청인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재 원 명	장치등록(고유)번호		
	제 조사		모델명
	제어장치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장치부착 자 동 차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		운행용도
	차대번호		소유자명 (전화:)
검사구분	[] 정기검사 [] 재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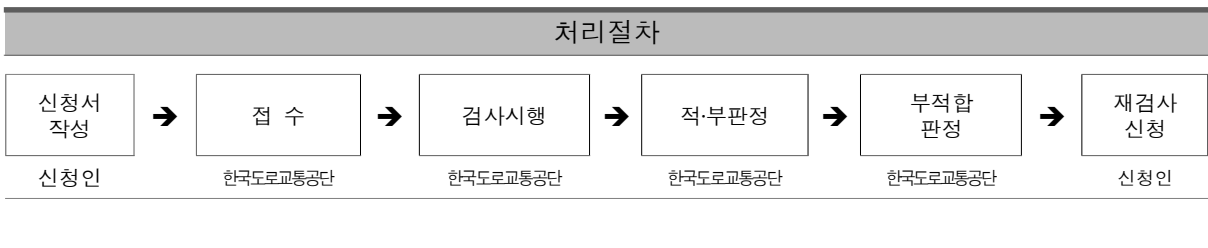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

1. 기본사항

접수번호		검사 구분	[] 정기검사 [] 재검사	검사 일자		검사 장소	
------	--	----------	---------------------	----------	--	----------	--

2. 검사신청자 정보

검 사 신청인 정 보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기초등록 정 보	장치등록(고유)번호	최초 설치일	제조사, 형식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3. 검사항목

검사 분류	검사항목	주요 점검 사항	판정
가. 동일성 확인검사	① 최초 설치장비와의 동일여부	모델, 음주측정부, 제어장치 일련번호 일치여부	☐ 적 ☐ 부
나. 외관검사	② 변경방지 봉인스티커 상태 ③ 음주측정부 외관 상태	스티커 상실, 재접착 흔적, 외관의 구멍 존부	☐ 적 ☐ 부
다. 음주측정부 정확도 검사	④ 영점교정 5회 주입 ⑤ 시동차단 수준 이하 알코올가스 5회주입 ⑥ 시동차단 수준 이상 알코올가스 5회주입	차단(실패), 비차단(성공)확인 3점교정항목 모두 기준만족 측정값 오류 기재	☐ 적 ☐ 부
라. 운행기록 정상저장여부 검사	⑦ 호흡샘플(입김) 정상주입 시 장치기록 여부 ⑧ 호흡샘플(입김) 소량주입 시 장치기록 여부	운행기록부 저장부 정상기록여부 확인 (호흡측정 성공/실패 확인)	☐ 적 ☐ 부
마. 시동잠금 제한 기능 이상 유무	⑨ 시동차단 수준(0.03%)의 알코올가스 주입	시동차단 성공여부 확인	☐ 적 ☐ 부
바.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얼굴 인식	⑩ 호흡샘플 주입 시 운전자의 얼굴 확인 가능	화질상태 등 운전자 식별 가능 여부 및 얼굴 중앙 위치 등	☐ 적 ☐ 부
사. 그 밖의 시정 권고 사항 기술	⑪ 그 밖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 등을 기술		

(세부기록지) 3. 음주측정부 정확도 검사기록지

검사 분류	측정결과값					평균값	기준허용값
	1회	2회	3회	4회	5회		
입김 또는 공기주입 검사							
시동차단 수준 가스 주입 검사							
시동 비차단 수준가스 주입 검사							

위 검사 결과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해 시행된 검사결과임.

검사 실무진	작성자	확인자
	성명 : (서 명)	직위 : 성명 : (서 명)

기타사항	검사 시행 중에 발견한 중대한 부적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부적합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

검사접수번호	접수 일자	검사일자
--------	----------	------

검 사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 원 명	장치등록(고유)번호		
	제조사	모델명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장치부착 자 동 차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운행용도	
	차대번호	소유자명 (전화:)	
검사구분	[] 정기검사		[] 재검사
검사결과	☐ 장치등록 일치성 결여 (해당모델, 번호불일치) ☐ 외관검사 미충족 (음주측정부 및 제어장치의 변경 흔적 존재, 최초설치상태와 상이점 발견) ☐ 측정결과값 오류 (기준 불만족 등) ☐ 운행기록 정상 저장 불만족 (기록 부재 및 일부 누락발견) ☐ 기타 중대한 시동잠금 제한기능의 오류 존재 ☐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사용자 얼굴인식 등 촬영 오류	최종판 정	적 합 [] 부적합 []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비고 : “부적합”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관련 조치 후 아래 통지일 기준 10일 이내로 재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

검사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사일자
검 사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 원 명	장치등록(고유)번호	
	제조사	모델명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장치부착 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운행용도
	차대번호	소유자명 (전화:)
검사구분	[] 정기검사 [] 재검사	
시정권고 사항		기타검사 의견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결과(시정권고)를 통보합니다.

※ 비고 : “시정권고” 사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차기 검사 시에도 위의 권고사항이 재발 반복되는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직인

제 호 교 육 확 인 증 확 인 1. 성 명 : 2.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1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 [] 음주운전교육(1회 위반자 ☐ 2회 위반자 ☐ 3회 이상 위반자 ☐ [] 배려운전교육 [] 법규준수교육(의무)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법 제73조제3항) [] 법규준수교육(권장) [] 벌점감경교육 [] 현장참여교육 [] 고령운전교육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6항)	
년월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조건부과(변경)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귀하의 운전면허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변경)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부과되는 조건	
변경되는 조건 (조건 변경 시)	• 변경 전 : • 변경 후 :

시·도경찰청장

직인

※ 알려드립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 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 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 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u><신 설></u>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 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해야 한다. 1.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을 갖출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 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 도록 할 것
<u><신 설></u>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자료

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

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에 부착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등록증 사본(「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을 한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만, 등록 및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신 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제35조제2항의 어린이통학버
스 신고증명서 및 운영자 신분
증 사본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
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
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
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
치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
다.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① 법 제50조의3제1
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착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장치명 등 장치 정보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의 정보

②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부착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장치명 등 장치 정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

가.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
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
동차의 정보

나. 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 명
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
만 해당한다)

다. 운영자 명의(어린이통학
버스 운영자의 경우만 해

<신 설>

당한다)

③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 절차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

2.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장·파손·분실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
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
해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
를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
지 않은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
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
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이행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경우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
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음주
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신 설>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
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
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
게도 알려야 한다.

제33조의8(음주운전 방
지장치의
검사 기간과 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
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
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
한 날

2.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
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
간 만료일(이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다음 날

3. 정기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의 다
음 날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신 설>

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정기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
단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④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
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
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
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8제2항
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8제2
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말일
의 다음 날부터 1년간 운행 기
록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
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

<신 설>

<신 설>

의8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
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
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33조의10(음주운전 방지장치 검
사의 신청) 정기검사를 받으려
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
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자
동차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33조의11(음주운전 방지장치 검
사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
교통공단은 등록된 음주운전 방
지장치 중 제33조의8제2항에 따
른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장치
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
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신 설>

2.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
거 법규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
사의 실시) ① 제33조의10에 따
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9서
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
에 기록하여 그때부터 3년간 보
관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
합한지를 판정하여 별지 제17호
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
다. 이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하고 음주운
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
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경우

2.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3. 시동제한 기능에 오류가 있는

<신 설>

경우

4. 운행기록이 정상적으로 저장
되지 않는 경우

5.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식
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할 수
없는 경우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별
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기검사결과 부적
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
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
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
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 ⑦ (생략)

<신설>

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시·도 경찰청장은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생략)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조건 부과와 통지 및 기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5조제2항, 제85조의3제2항 -----

-----부여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
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
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
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⑤ (생략)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
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
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
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

-----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